

검 토 보 고 서

안 건 명	부서명
서울특별시 마포구 관광협의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	관 광 과

(2016. 10. 27)

마포구의회 행정건설위원회
[전문위원 김 은 모]

서울특별시 마포구 관광협의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

1. 안 건 명

- 서울특별시 마포구 관광협의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

2. 제출일자 및 제출자

- 제출일자 : 2016년 10월 14일 (금)

- 제출자 : 마포구청장

3. 의안 회부일자

- 2016년 10월 17일 (월)

4. 관계근거

- 관광진흥법 제48조의9 (지역관광협의회 설립)

[검토보고]

서울특별시 마포구 관광협의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

< 제정이유 >

「관광진흥법」 제48조의9(지역관광협의회 설립)의 본조 신설에 따라 지역관광 진흥의 주체로서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하고, 공적기능을 수행하는 기구인 지역관광협의회 설립 및 지원근거를 마련하여 우리 구 지역관광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

< 주요내용 >

가. 조례 제정의 목적 및 정의(안 제1조 및 2조)

나. 관광협의회 설립허가 및 기능(안 제3조 및 제4조)

○ 설립 허가하는 경우 관광사업자, 관광 관련 사업자, 관광 관련 단체, 주민 등 이해관련자 고루 참여

○ 관광협의회 기능

- 지역의 관광수용태세 개선을 위한 업무
- 지역관광 홍보 및 마케팅 지원 업무
- 관광사업자, 관광 관련 사업자, 관광 관련 단체에 대한 지원
- 마포구의 관광진흥을 위한 장·단기시책의 수립 및 건의
- 구청장으로부터 위탁받은 업무
- 마포구 관광 관련 기관·단체 간의 연계·협력 업무 수행
- 그 밖에 지역관광사업 전반에 대한 협의 및 건의 등

다. 관광협의회 구성 및 조직(안 제6조)

○ 협의회 회원들의 자발적 구성

○ 협의회 위원 구성

- 이사 : 10명 이상 20명 이하(회장 1명과 부회장 2명 이내를 포함)
- 감사 : 2명

라. 관광협의회 운영 지원(안 제13조)

○ 각종 사업 및 협의회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 지원

[검토의견]

- 동(同) 조례안은 마포구가 관광도시로서 발전을 위한 관광인프라를 확충하고 전략적인 관광마케팅을 통한 문화관광도시 구현 등 우리 구 지역 관광 활성화를 도모하고, 지역관광 발전의 주체로서 다양한 관광관련 이해관계자가 참여하여 공적기능을 수행하는 기구인 지역관광협의회에 대한 설립 및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,
- 동(同) 조례는 제1조 목적에서 부터 제15조 시행규칙까지 본문 15개조와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,
- 주요 내용으로는
 안 제1조 및 제2조에서 조례의 목적 및 정의를 규정하였고
 안 제3조에서는 협의회의 설립허가 시 관광관련 사업자, 단체 및 주민 등 참여 등을 규정하였으며
 안 제4조~제6조에서는 협의회의 업무 등 기능과 운영 그리고 협의회 구성 및 조직을 규정하였고
 안 제7조~제9조에서는 회장 등의 직무와 선출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위원의 해촉 규정을 두었고
 안 제10조 및 제11조에서는 협의회 사무 처리를 위해 간사를 두어 회의록 작성 등 행정사무를 처리 할 수 있도록 하였고
 안 제12조에서 구는 안전행정국장 또는 관광과장을 위원으로 하고, 마포구 관광 진흥을 위해 민간과 공공의 이해관계자가 고루 참여하는 실무협의회를 둘 수 있다.라고 하였으며,
 안 제13조 및 제14조에서는 협의회 운영 등에 필요한 보조금을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할 수 있고, 협의회가 상위 법령에 어긋나게 운영하거나 목적 이외의 사업 또는 허가조건에 위반되는 경우 및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허가를 취소 할 수 있도록 하였고,
 안 제15조(시행규칙)-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로 규정 하였음

- 검토의견으로는 동(同) 조례안은 2016. 9. 13.~ 10. 3. 까지 입법예고 기간 중 구의회 및 관련부서에서 “실무협의회는 구의 관광 진흥을 위해 민간과 공공의 이해관련자가 고루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.”라는 의견이 제출되어 이를 반영하여 안 제12조(실무협의회)제2항을 신설하였으며, 우리 구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쳐 절차상 문제점은 없으며, 또한 조례 제정 목적이 관광산업 관련 이해관계자가 미래의 마포구 지역관광 활성화를 위해 관광산업이 나아갈 정책을 제시 할 수 있는 관광협의회 및 실무협의회 제도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
- 관광관련 담당부서에서는 지역관광 활성화의 주체로서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공적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관광협의회를 설립·지원하고 지역 공동체와 수요자 중심의 지역관광 민관협력 체계를 조기에 정착 할 필요성에 비추어 볼 때 조례 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나, 다만, 조례 시행 후 마포구 관광협의회 설립 허가 및 지원 등에 대한 세부적인 절차와 기준에 대한 후속 조치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고 그 밖에 소요예산 확보 방안 등 세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 됨.

관광진흥법

[시행 2016.8.4.] [법률 제13958호, 2016.2.3., 일부개정]

제48조의9(지역관광협의회 설립) ① 관광사업자, 관광 관련 사업자, 관광 관련 단체, 주민 등은 공동으로 지역의 관광진흥을 위하여 광역 및 기초 지방자치단체 단위의 지역관광협의회(이하 “협의회”라 한다)를 설립할 수 있다.

② 협의회에는 지역 내 관광진흥을 위한 이해 관련자가 고루 참여하여야 하며, 협의회를 설립하려는 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.

③ 협의회는 법인으로 한다.

④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.

1. 지역의 관광수용태세 개선을 위한 업무
2. 지역관광 홍보 및 마케팅 지원 업무
3. 관광사업자, 관광 관련 사업자, 관광 관련 단체에 대한 지원
4.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업무에 따르는 수의사업
5.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업무

⑤ 협의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는 회원이 납부하는 회비와 사업 수익금 등으로 충당하며,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협의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.

⑥ 협의회의 설립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

⑦ 협의회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 외에는 「민법」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.